

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

심 사 보 고 서

1994. 12. 27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1994년 12월 19일 사하구청장

○1994년 12월 26일(수정예산안 제출)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12월 20일 회부, 12월 26일 수정예산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38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'94. 12. 27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성 중 무)

가. 제안이유

○세입예산은 수입원별 목표액 미달 및 초과분에 대한 가감정리와 국·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

○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국·시비 보조사업 및 계획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'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예산안의 내용

1) 예산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증 감	
			3회추경	비 율 (%)
계	66,423,062	65,598,010	825,052	1.2
일 반 회 계	60,120,406	59,391,880	728,526	1.2
특 별 회 계	6,302,656	6,206,130	96,526	1.6
의 료 보 호 기 금	2,506,855	2,030,329	476,526	23.5
새마을소득특별지원	129,118	129,118	—	—
영세민생활안정기금	250,205	250,205	—	—
주 차 장	891,693	891,693	—	—
주거환경개선사업	824,785	824,785	—	—
장립유수지이설사업	1,700,000	2,080,000	△ 380,000	△ 18.3

2)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총괄

가) 세입예산안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예 산	증 감	
			3회 추경	비 율 (%)
계	60,120,406	59,391,880	728,526	1.2
지 방 세	15,473,000	15,469,000	4,000	—
세 외 수 입	14,792,952	14,891,952	△ 99,000	△ 0.7
경 상 적 세 외	5,766,616	5,695,616	71,000	1.2
임 시 적 세 외	9,026,336	9,196,336	△ 170,000	△ 1.8
조 정 교 부 금	19,567,000	19,567,000	—	—
보 조 금	10,017,454	9,193,928	823,526	8.9
국 고 보 조 금	3,861,587	3,906,242	△ 44,655	△ 1.2
시 비 보 조 금	6,155,867	5,287,686	868,181	16
지 방 채	270,000	270,000	—	—

나) 세출예산안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예 산	증 감	
			3 회 추 경	비 율 (%)
계	60,120,406	59,391,880	728,526	1.2
의 회 비	667,829	692,030	△ 24,201	△ 3.5
일 반 행 정 비	19,335,404	19,494,565	△ 159,161	△ 0.8
사 회 복 지 비	13,695,119	13,719,726	△ 24,607	△ 0.2
산 업 경 제 비	944,707	920,656	24,051	2.6
지 역 개 발 비	22,636,009	22,162,170	473,839	2
문 화 체 육 비	1,770,335	1,394,618	375,717	26.9
민 방 위 비	126,267	125,967	300	—
지 원 및 기 타	944,736	882,148	62,588	7.1

3)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내역

□ 의료보호기금 (예산규모 2,030,329 → 2,506,855천원) 476,526천원

○ 세 입

- 국고보조금(1,638,378 → 1,990,037) 351,659
- 시비보조금(372,642 → 497,509) 124,867

○ 세 출

- 의료보호환자 진료비(1,988,307 → 2,482,489) 494,182
-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융자금 △ 17,656

□ 주차장특별회계 (예산규모 891,693천원) 규모변경 없음

○ 세 출

- 주·정차 단속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,989
- 예비비(610,005 → 607,016) △ 2,989

□ 장림유수지이설사업		(예산규모 2,080,000 ⇒ 1,700,000천원)	△ 380,000천원
○ 세 입			
• 순세계 잉여금			28,028
• 선수금(2,080,000 → 1,671,972)			△ 408,028
○ 세 출			
• 공사 감리비(450,000 → 225,000)			△ 225,000
• 부대비 등			△ 155,00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일반회계

○지방세인 종합토지세에서 157,000천원 감소하고 재산세,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에서 161,000천원이 증가하여 지방세에서는 4,000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99,000천원이 감소되고 국·시비 보조금에서 823,526천원 등이 증가되어 세입은 728,526천원 계상되었음.

○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에서 128,010천원 민간단체 보조금 등 경상사업비에서 70,05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투자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내시로 지역개발비에서 473,839천원이 증가하여 감천2동 신한맨션 ~ 감정국교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520,000천원, 지하철역(대티, 괴정역)출입구 확장 토지매입비 198,000천원, 레포츠공원내 실내 수영장 설치비 393,000천원 및 괴정3동사 신축 토지매입비 등이 계상되어 주민의 편의를 위한 투자사업비가 929,000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음.

○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지연,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16건에 7,974,688천원이 지역개발사업과 일반행정 사업이 다음 연도로 옮겨 집행하게 되었음.

□ 특별회계

○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·시비 보조금 476,526천원이 추가 내시되고 장림유수지 이설사업비에 서 3억 8천만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는 96,526천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없이 세출에서 2,989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음.

○세입은 수입원인별 목표액초과 미달세입을 가감 정리하고 국·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계상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사업 조정 등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효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